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3일, 안철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철수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

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안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의 보호 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응급실에서 연간 800건 이상 폭력 등이 발생(2024년 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의를 지닌 것으

로 보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